

선 람	기관위원장



제691호 2024년 4월 3일

익 산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청

발행처 : 홍보담당관

공 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161호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1
- 익산시 공고 제2024-1179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6

사업소, 읍·면·동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7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3

회 람									
--------	--	--	--	--	--	--	--	--	--

익산시 공고 제2024 - 1161호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업종 입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 원상회복의 예외조항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의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

-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는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인감증명서 요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소상공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청 임시청사
소상공인과 (전화 063-859-5219, 팩스 063-859-50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859-5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고 제2024-1179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상버 관리 관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상 지급기준일을 수정하고, 실제 지급시기를 지침으로 정함(안 제2조 제2호)

나. 분기별 지원 금액을 예산편성액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함(안 제4조)

다. 협약사항 위반 협약업소에 대한 사업비 환수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전화 859-5344, 팩스 859-507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계 담당자 (☎063-859-5344, 73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호 “지급기준일”의 정의 “**매분기 첫 날**”을 “**매 분기 말 20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이용료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그 밖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20조의 제목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를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그”로 한다.

부 칙

[별지 제1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2. “지급기준일”이란 매 분기 첫날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급기준일”이란 매 분기 말 20일을 말한다.</p>
<p>제4조(지원내용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 2만4천원씩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p>	<p>제4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p> <p>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이용료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p>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
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다.

3. 그 밖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

----- 또는 지
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그
-----.

1. ~ 3. (현행과 같음)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7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4. 03. 29 ~ 2024. 04. 18. (20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차 명 (차대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일	사 유	비고
05누9386	E300 4Matic (WDDZF4KB8HA208781)	배*현	2024. 03. 27.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될 수 있고,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익 산 시 장

(관 인 생 략)